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·기업 등의 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,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위한 시설 요건 중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고, 우수수산물 등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증 신청서류 등을 비치·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며, 바다해설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교육 이수 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1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00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민·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

제1조(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년마다”를 “3년마다”로 한다.

별표 1 제4호사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장부 및 서류”를 “장부 및 서류(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제4호라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장부 및 서류”를 “장부 및 서류(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2 제4호다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장부 및 서류”를 “장부 및 서류(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다목 중 “가정폭력”을 “가정폭력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2 제2호 라목 및 마목 중 “가정폭력”을 각각 “가정폭력등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

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사무실	구급차의 출동명령,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-------	---

제3조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
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 중 “60시간”을 “53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해설기법의 교육시간(시간)란 중 “20”을 “15”로 하며, 같은 호 수산업에 대한 이해

의 교육시간(시간)란 중 “12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2호의7서식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삭제한다.

제8조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가목8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입원실에 설치하는 화장실 내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9조(「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상근(常勤)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

4의2.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

것

제11조제1항 중 “인증심사원”을 “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(이하 “인증심사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1호	자격 취소		
2.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2호	자격 취소		
3. 법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3호	자격 취소		
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	법 제17조제1항제4호	자격 정지 1년	자격 정지 3년	자격 취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<u>2년마다</u> 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~ 8. (생략)	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 <u>3년마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~ 8. (현행과 같음)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수탁판매의 예외) ① (생략)	제11조(수탁판매의 예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수산물을 매수한 날부터 <u>3년</u>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년</u>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
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5조(관련 문서의 비치·보존 기간) ① (생략) ② 우수수산물식품등인증기관으 로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 서를 지정일부터 <u>5년</u> 동안 비치 · 보존해야 한다. 1. 2. (생략)	제45조(관련 문서의 비치·보존 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3년</u>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25조의6(품질검사의 신청 등)	제25조의6(품질검사의 신청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 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「전자 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 <u>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의</u> <u>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 <u>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</u> <u>여야 한다.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
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) ①·② (생략) ③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<u>인증심사원(이하 “인증심사원”이라 한다) 1명 이상을 포함한 상근(常勤) 인력을 2명 이상 갖추는 것</u>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④ ~ ⑨ (생략) 제11조(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)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	제7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상근(常勤)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</u> <u>4의2.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·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</u> 5. (현행과 같음) ④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

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<u>인증심사원</u>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. ② ·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(이하 “인증심사원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